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7월 26일, 정부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7월 29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 9. 23.)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9. 24.)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

제7차 전체회의(2024. 9. 2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정부 제출)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해 가는 경우 회수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공탁자는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 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화실)

(1) 형사사건 공탁물의 회수 제한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 있어 ①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②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공탁물의 수령·회수) ①·② (생략)	제9조(공탁물의 수령·회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 제2항(제9조의2 단서에 따라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 ----- ----- ----- ----- ----- -----.

현행	개정안
④ (생략) <u><신설></u>	④ (현행과 같음) <u>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공탁자는 형사사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u> <u>1.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u> <u>2.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u>

나. 현행 「공탁법」 상 공탁물의 회수 관련 규정

현행 「공탁법」 제9조에서는 공탁물의 수령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도록 하고(제9조제1항),

공탁자는 ①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¹⁾, ②작으로 공탁을 한 경

1) 「민법」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

우, ③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있어 그 사실을 증명하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고(제9조제2항),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 물품 매각 대금 포함)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9조제3항).

다. 검토의견

실무상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공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형사사건 관련 공탁은 실무상 형사사건에서 「민법」 제750조²⁾의 손해배상액을 「민법」 제487조³⁾에 따라 변제공탁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바⁴⁾, 공탁자는 「공탁법」 제9조제2항 및 「민법」 제489조에 따라 별도의 회수제한 없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음.

이에 대법원에서는 일반 변제공탁 양식과 형사사건용 변제공탁양식을 구분하고, 형사사건용 금전공탁서에서는 『형사사건번호와 사건명』 및 『공탁금에 대한 회수제한 신고란』을 두어 공탁자가 피공탁

니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4)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자의 동의를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회수제한신고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⁵⁾.

<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의 회수제한 신고란 >

회수 제한 신고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공탁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회수신고란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금전 공탁서(변제 등)”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수제한 신고를 하는 것은 공탁자에게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고⁶⁾,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판결 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피공탁자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공탁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무자인 가해자가 공탁으로 감형 등을 받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사이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이른바 ‘먹튀공탁’ 사례가 발생하여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⁷⁾.

이에 개정안은 형사사건 관련 공탁에 있어 ①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또는 ②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이 있는 경우를

5)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6) 실무상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의 회수제한신고란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금전공탁서(변제 등) 양식을 사용하도록 함.

7) 머니투데이, “이탄희 “먹튀 공탁 통한 감형 막아야”...송경호 “다각도 조치””, 2023년 10월 17일자 기사, 법무부 보도자료, “형사공탁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년 7월 23일자 기사 등 참조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여 형사사건 관련 공탁제도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특히 현재도 형사사건과 관련된 공탁은 회수제한 신고를 통해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변제공탁과는 다른 형태로 공탁물 회수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공탁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일반 공탁물 회수에 관한 근거 조문인 제9조제2항⁸⁾에도 불구하고 ①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②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바,

제9조제2항의 회수 사유 중 제2호(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사유는 절차상 과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공탁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수 가능 사유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

8) 「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수령·회수)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공탁물 회수 동의 등이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법원규칙으로의 위임 사항이 공탁물 회수 절차로 제한되어 있는바, 개정안 제9조의2제1호에서 규정한 공탁물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의 공탁물 회수 동의 또는 수령 거절의사의 통고 방법 및 절차 등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임 근거를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개정안은 피고인 등이 공탁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도 전에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가는 방법으로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현재 실무상 형사공탁시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제출이 강제되지 않고 누락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명확한 법제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법원행정처는 현재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 제출은 임의적인 것으로 회수제한신고가 누락되었음에도 형사재판부가 이를 간과한 채 공탁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하여 선고하고, 이후 감형받은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형사공탁에 있어 회수제한을 강제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임.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회수를 제한하고 있는바, ‘권리회복’이라는 용어가 모호하므로 형사사건의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공탁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탁회수 사유 중 착오공탁으로 인한 회수는 수리될 필요가 있으므로 회수 가능 사유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김승원위원)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인 경우에도 현행 「공탁법」 제 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착오공탁인 경우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탁물 회수 및 회수 동의의 방법·절차 등 대법원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에 대한 위임 규정 등은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함.

6. 심사결과

수정의결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9.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수정이유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인 경우에도 현행 「공탁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착오공탁인 경우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탁물 회수 및 회수 동의의 방법·절차 등 대법원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에 대한 위임 규정 등은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 가.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현행 「공탁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물 회수가 가능하도록 수정함(안 제9조의2제1항 본문).
- 나. 공탁물 회수 및 회수 동의의 방법·절차, 수령 거절의사의 통고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 다. 공탁물 회수 제한에 관한 개정규정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함(부칙 안 제2조).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3항 중 “제9조의2 단서”를 “제9조의2제1항 단서”로 한다.

안 제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탁자는 형사사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를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 및 회수 동의의 방법·절차, 수령 거절 의사에 통고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를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④ (생 략)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공탁물 회수
의 제한) 공탁자는
형사사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
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제9조제2
항에도 불구하고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
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공탁물의 수령인
으로 지정된 자
가 공탁물의 회
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2.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
건에서 무죄판결

제9조의2(공탁물 회수
의 제한) ① 공탁
자가 형사사건 피
해자를 위하여 변
제공탁을 한 경우
에는 제9조제2항제
1호 및 제3호의 사
유로는-----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을 증명
하여-----
-----.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u>이</u> <u>확정되거나</u> <u>불기소 결정(기소</u> <u>유예는 제외한다)</u> <u>이 있는 경우</u> <u><신 설></u> 부 칙 제2조(공탁물 회수의 제한에 관한 적용 례) 제9조의2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 행 이후 <u>피해자의</u> <u>권리 회복에 필요</u> <u>한 금전을 공탁한</u> <u>경우</u>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u>공탁물 회수 및 회</u> <u>수 동의의 방법·절</u> <u>차, 수령 거절의사</u> <u>의 통고 방법·절차</u> <u>등에 필요한 사항</u> <u>은 대법원규칙으로</u> <u>정한다.</u> 부 칙 제2조(공탁물 회수의 제한에 관한 적용 례) ----- ----- -----<u>형사사</u> <u>건 피해자를 위하</u> <u>여 변제공탁을 한</u> <u>경우</u>-----.
--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① 공탁자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2.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 및 회수 동의의 방법·절차, 수령 거절 의사의 통고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탁물 회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공탁물의 수령·회수)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생략)	제9조(공탁물의 수령·회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항(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 ----- ----- ----- ----- ----- ----- ----- ----- ----- -----.
<신설>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①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2.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 및 회수 동의의 방법·절차, 수령 거절의사의 통고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